관계부처 합동

보도자료

힘내라 대한민국

✍보도일시 : 7.8(수) 12:00이후 보도가능 ✍총 8쪽	❖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오영민(044-202-7526), 사무관 임희종(044-202-7527) ❖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최예명(044-201-3372) ❖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과장 이재영(02-3150-2046), 계장 노동진(02-3150-2846) ❖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장 장차철(044-200-7261), 사무관 안진철(044-200-7269)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정부, 「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」 발표

-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,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,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

□ 정부는 7월 8일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 국민권익위원회 등 **관계부처 합동**으로 수립한 **「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」**을 발표했다.

○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,

-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**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·폭행 등 갑질을 예방**하고 피해가 발생한 **경비원을 보호**하여

- **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**가 **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**에서 **일할 수 있도록** 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이번 **「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」**의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**공동주택** 입주민 등의 갑질을 **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**한다.

- **공동주택 관리규약**에 **"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"**을 **반드시 규정**하도록 하고,

-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'**표준 관리규약 준칙'을 마련**하고,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**시·도지사에 권고**한다.

- 아울러,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**「갑질피해 신고센터」**(국민신문고, www.epeople.go.kr)로 일원화하고,

- **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**에 대해서는 **엄정대응**하고 수사과정에서 **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** 한다.

○ 둘째, 경비원에 대한 **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**한다.

- **국토교통부·고용노동부·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**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**캠페인을 실시**하고,

- **입주자대표, 관리사무소장 등**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**의무교육에 반영**한다.

○ 셋째, 공동주택 경비원이 **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**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**고용관계, 근무환경 등을 개선**한다.

-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**근로조건 자가진단, 노무관리지도,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**을 실시하고,

- 특히, 경비원 등에 대한 **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**될 수 있도록 **집중적으로 지도**한다.

- 아울러,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**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**에게 **업무의 일시적 중단·전환 등 보호조치**를 하도록 하고,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**불이익 조치를 금지**한다.

-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**트라우마 상담, 스트레스 상담** 등도 지원한다.

○ 넷째,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**갈등 등을**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**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** 한다.

-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**'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'**를 구성하고, 경비원의 **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**하여 **개선방안을 마련**한다.

- 경비원의 건강·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, 휴게·휴식 기준 강화 등 **감시·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**한다.

○ 다섯째,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, 근로시간 등 **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**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**지도·감독에 활용**한다.

□ 정부는 이번 **대책을 차질없이 추진**하는 한편, **입주자,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**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**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**

○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**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**할 수 있도록 **최선을 다할 것이다.**

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사무관(☎044-202-7527),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최예명 사무관(☎044-201-3372),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노동진 계장(☎02-3150-2846),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안진철 사무관(☎044-200-72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1	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

1.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

1 공동주택 내 자율적 대응 기준 마련 <국토부>

○ **관리규약 준칙**(시·도지사)에 **"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"**을 포함토록 하고,

- **관리규약**(입주자)의 **필요적 기재사항을 신설**하여 "경비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"은 **관리규약에 반영**토록 **의무화**(시행령 개정) ('20.下)

-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, **「표준 관리규약 준칙」을 마련**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**시·도지사에 권고** ('20.8월)

* 공동주택은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개정,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관리규약 위반시 시정명령 → 과태료(1천만원 이하) 부과

< 표준 관리규약 준칙(안) 예시 >

▪ **(폭언 등 금지)** 입주자 등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 금지

▪ **(폭언 등 예방 및 신고)**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예방·갈등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, 폭언 등 발생시 관리주체 또는 자치조직에 신고 가능

- 관리주체 또는 자치조직은 갈등 해결 노력 및 관계기관에 신고

▪ **(발생 시 보호조치)** 입주자 등의 폭언 등 발생 시 관리주체 등의 보호조치 의무

▪ **(불이익 처우 금지)**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

2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 <공통>

○ **(신고)**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는 **범정부 「갑질피해 신고센터」**(국민신문고, www.epeople.go.kr)로 **일원화** ('20.7월~)

-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**적극 조치**

< 소관 사항별 신고·조치 예시 >

공동주택 경비원 대상 갑질 피해발생	⇨	**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 (국민신문고 홈페이지, www.epeople.go.kr)**	⇨	**국토부(지자체)**
				·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조치 · 일부 지자체 법률·심리상담 지원
				경찰청
				· 형법 위반사항 조치
				고용부
				· 노동법령 위반사항 조치

○ **(수사 등)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**에 대한 **범죄**(폭력·상해·모욕 등)에 대해서는 **엄정대응 및 신원노출 방지 강구** <경찰청>

2.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

1 아파트 대상 공동캠페인 실시 <국토부·고용부·경찰청>

○ **국토부-고용부-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**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**공동캠페인** 실시 ('20.7월~)

* 단지 내 폭언 등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게시, 반상회를 통한 확산, 카드뉴스 등

2 대상별 의무교육 강화 <국토부·경찰청>

○ 입주자대표, 관리사무소장 등 **대상별 의무교육**에 **경비원 인권존중, 갑질 대응조치 등**에 대한 내용을 포함 ('20.9월~)

* ▲**(입주자대표)**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(공동주택관리법, 연4시간)
▲**(관리사무소장)**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(공동주택관리법, 보임시)
▲**(경비원)** 경비이론·실무, 직업윤리 등(경비업법, 채용시 24시간·매월 4시간)

- **입주자**에 대해서는 **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 지속**

3.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

1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·점검 <고용부>

○ **(자가진단) 전국 공동주택 전체**를 대상으로 **자율적**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**노무관리 자가진단** 실시 ('20.6~7월)

* 기존 자가진단표를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맞추어 보완 및 배포

○ **(노무관리지도)** 노무관리가 **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***(150개소)를 대상으로 **노동관계법 준수 지도** ('20.7~8월)

* (예시) 최근 5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단지 등

○ **(근로감독)** 노무관리지도 후 **미개선** 또는 **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** 등 대상으로 **정기감독** 실시 ('20.9월~)

2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 마련 <고용부>

○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**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**에게 **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**하도록 하고

- 근로자의 **보호조치 요구** 및 사용자에게 이를 이유로 한 **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부과** (산업안전보건법 개정) ('21년)

○ **피해 경비원**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, 휴식부여 등 「**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**」 **마련** ('20.7월)

<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(안) 예시>

- **(기본사항) 고충처리위원회 설치·운영**, 경비원 권리보장 등
- **(예방조치)** 경비원에게 폭언·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**문구 게시·안내**, 경비원을 위한 건강보호 지침 **마련 및 교육**
- **(사후조치)** 업무의 **일시적 중단, 휴게**시간의 연장, **치료 및 상담지원,** 가해자에 대한 **고소고발·손배청구 등 대응시 지원** 등

3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유도 <고용부>

○ **사업장 지도**를 통해 경비원 **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**될 수 있도록 유도 ('20.8월~)

○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결과 **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** 대상에 포함 ('21년~)

④ 상담서비스 제공 <고용부>

○ 안전보건공단의 「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」, 근로복지공단의 「EAP센터」 등 심리상담 지원 ('20.7월~)

* (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) 대표전화(1588-6497) 또는 방문상담(전국 8개소) (EAP센터) 근로복지넷(www.workdream.net)을 통해 온·오프라인 상담(예약) 가능

4.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

①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추진 <국토부·고용부·경찰청>

○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 추진 ('20.下)

- 관계부처 합동으로 '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'를 구성,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마련

* 경비원 업무 범위 조정에 따른 「고용영향평가」 실시('20.7월~)

② 감시·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 <고용부>

○ 근로감독 결과 및 전문가 논의(노동시간 포럼, 3~11월) 등을 통해 감시·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개선 검토 ('20.12월)

* 감단근로자 건강·권리 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, 휴게·휴식 기준 강화 등

5.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

○ (조사체계 구축)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, 근로시간,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 마련 <국토부, '20.下>

-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, 고용부·지자체의 취약단지 지도·감독에 활용

○ (이행상황 점검)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, 교육 실시,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'21년 중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<공통>

붙임2 코로나19 예방수칙